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등)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서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 가. 특허취소신청 사실증명
 - 나. 심판청구 사실증명
 - 다. 특허취소결정확정 사실증명
 - 라. 심결확정 사실증명
 - 마.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 바.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 그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의 내용보정에 한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

2. 인력 요건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 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제120조의7 및 별지 제5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로 한다.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접수번호】

【정정대상항목】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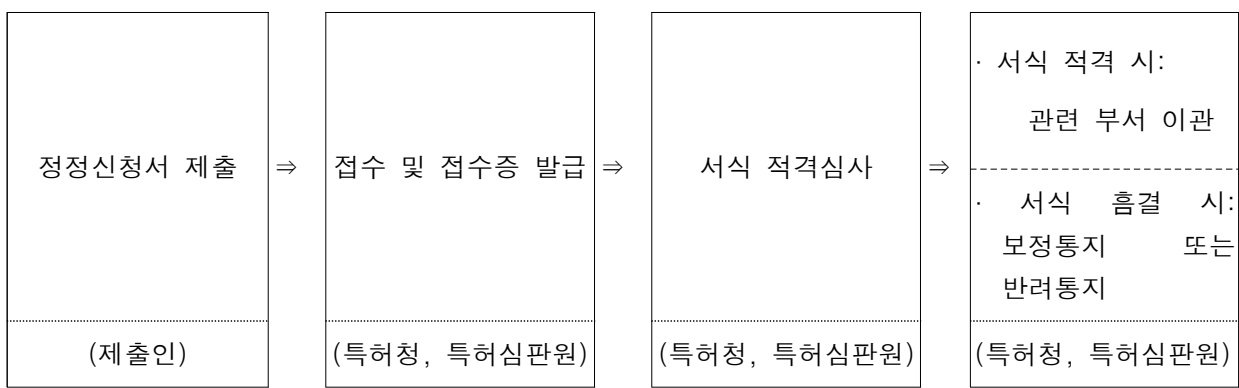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화된 내용을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그 전자화된 내용과 당초 제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전자화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5)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란

제출인이 밝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청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최소신청에 관한 절차	【최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인 경우에는 이 서식의 우측 상단에 "PCT"라고 적습니다.

4. 【정정할 사항】란

가. 【정정할 서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정정하려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일자를 적습니다.

[예]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보정서(2007. 1. 1. 제출), 의견서(2007. 1. 1. 제출) 등

나. 【접수번호】란에는 정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다. 【정정할 서류】가 다음 예 1과 같이 2 이상의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정정할 서류】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1] 정정할 서류의 내용

정정할 서류	정정대상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출원서	발명의 국문명칭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	
명세서	청구항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	

[예 2] 기재방법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출원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합니다.

라. 【정정대상항목】란

정정하려는 항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보정내용 등

마. 【정정대상 항목】 과 【정정내용】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고 각각의 정정내용 사이에는 1행의 공백행을 삽입하여 구분합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정정대상항목】 발명자

【정정내용】 "홍동길"을 "홍길동"으로 정정합니다.

바. 【정정내용】

정정하는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예 2] 【정정내용】 "도2-슬릿...반응성 혼물"을 "도2-슬릿...반응성 혼합물"로 정정합니다.

[예 3] 【정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으로 정정합니다.

[예 4] 【정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로 정정합니다.

사.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내용】의 다음 행에 "아래(별첨)"란을 만들어 정정할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내용

【정정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중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별첨)

【해결하려는 과제】

폴리우레탄 발포제를 생성할 때에는, 1종 이상의 반응성 성분(폴리이소아이트 및 이소아 네이트-반응성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 특히 폴리올)을 액상 또는 기상 팽창체와 혼합한 다음, 다른 성분과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몰드에 배치식으로 또는 콘베이어벨트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혼합물을 팽창시키고 경화시킨다.

1. 액체 2성분 반응성 혼합물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2. 기포 핵을 유도하는 경우, ...대응하여야 합니다.

[예]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2와 청구항 3"의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별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의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은 ...특징으로 하는 방법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2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존번호: 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

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 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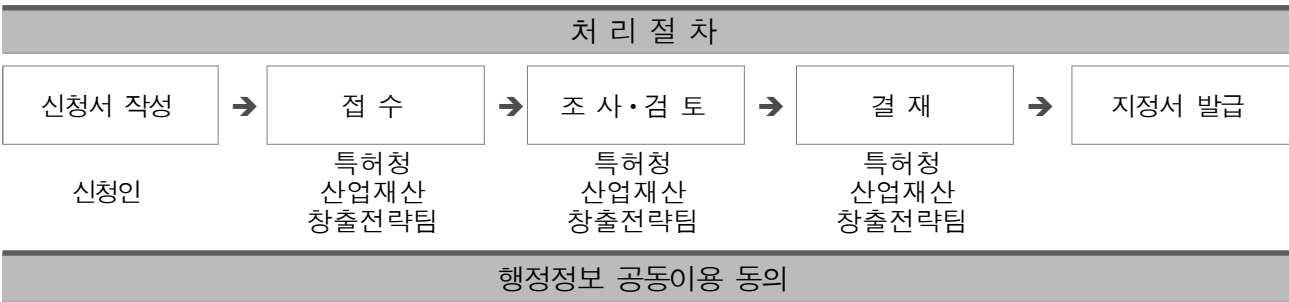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진단 기술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업 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진단기술분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허청장

직인